



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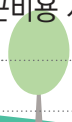
Ministry of Health and Welfare





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

1. 생계 지원	8
• 기부식품등 제공	8
• 아동 급식 지원(지방이양사업)	8
• 양곡할인	8
• 영양플러스	8
• 자산형성지원사업(청년내일저축계좌)	9
• 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	9
•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	9
• 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분유 지원	9
• 차상위 자활근로	10
• 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	10
• 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	10
• 학교우유급식	10
• 우유바우처 시범사업	10
• 전기요금 할인	11
• 도시가스요금 경감	11
• 열요금 감면	11
• 미소금융	11
•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	12
• 풍수해보험 사업	12
• 농업인 안전보험	12
• 어업인 안전보험	12
•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	13
• 중증장애인 근로자 출·퇴근비용 지원	13
• 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	13
• 양육비 이행 확보	13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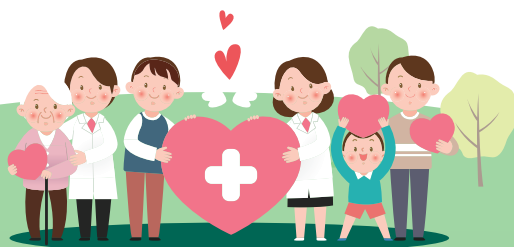
-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14
- (보훈)생계지원금 14
- (보훈)생활지원금 14

2. 의료 지원 15

- 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 15
- 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 15
- 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 15
-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 16
- 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 16
- 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 16
- 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 16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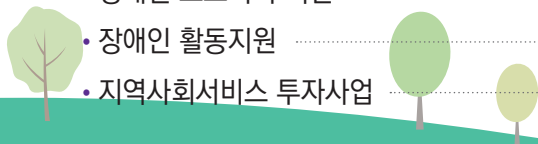
※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 17

- 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 17
- 장애인 의료비 지원 17
- 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 17





3. 교육 지원	18
• 국가장학금(1 유형)	18
• 다자녀(세자녀 이상)장학금	18
• 대학생 근로장학금	18
• 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	19
• 파란사다리	19
• 우수학생 국가장학금(드림장학금)	19
• 일반상환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	19
• 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	20
• 평생교육 바우처 지원	20
• 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	20
• 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수수료 면제	20
4. 주거·돌봄 지원	21
• 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	21
• 농촌집 고쳐주기	21
• 가사간병 방문 지원	21
• 노인맞춤 돌봄 서비스	21
• 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	22
• 방과후 보육료 지원	22
•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	22
• 발달재활 서비스	22
• 언어발달 지원	23
• 장애아 가족양육지원	23
•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	23
• 장애인 활동지원	23
•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	24





- 지역아동센터 지원 24
- 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(드림스타트) 24
- 초등돌봄교실 24
- 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 25
- 아이돌봄 지원 25
- 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 25

5. 문화·법률 등 기타 지원 26

- 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 26
- 취업맞춤특기병 학력조건 완화 26
- 사회복지무요원 겸직허가 26
- 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 26
- 서민 법률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 27
- 통합문화이용권 27
- 과학문화바우처 27
- 방송소외계층 방송접근권 보장 27
- 산림복지서비스 이용권 28
- 스포츠강좌 이용권 28
- 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 28
- 지식재산권 보호지원 28

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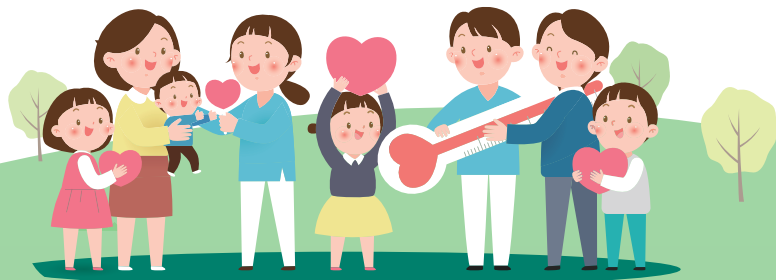
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

1. 생계 지원	29
• 긴급복지	29
• 기초연금	29
• 장애인연금	29
• (보훈)생활조정수당	30
• 근로장려세제(EITC)	30
• 자녀장려세제(CTC)	30
• 국민취업지원제도	31
• 공공산림 가꾸기	31
• 산림복지 일자리	31
• 개발제한구역 생활비용 보조	31
• 새희망홀씨	32
• 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	32
•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	32
• 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32
• 청소년 특별지원	32
• 새일여성인턴	33
• 근로자햇살론	33
• 햇살론15	33
• 햇살론유스	33
• 햇살론뱅크	34
• 햇살론카드	34
• 최저신용자 특례보증	34
•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	34








2. 의료 지원	35
• 국가암검진	35
• 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	35
• 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	35
• 치매 검진 지원	36
• 재난적 의료비 지원 사업	36
• 한부모가정 의료보험	36
3. 주거·돌봄 지원	37
• 국민임대주택 공급	37
• 기존주택 전세임대·용자	37
• 다가구 매입임대출·용자(기존주택 매입임대)	37
• 영구임대 주택공급	37
• 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	38
• 통합공공임대 공급	38
•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용자	38
• 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	38
• 장애인 주택개조사업	38
• 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	39
• 온가족보듬사업	39
• 일상돌봄서비스	39






차상위계층 자격을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사업







1. 생계 지원
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기부식품등 제공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긴급지원대상자, 차상위계층(생계·의료급여를 받지 아니하는 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를 포함), 생계·의료급여 수급신청 탈락자, 생계·의료급여가 중지된 사람, 기타 기부식품등 제공이 긴급히 필요한 저소득 재가 대상자 중 형편이 어려운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푸드뱅크에서 대상자에게 직접 기부식품등을 제공하거나 대상자가 직접 매장(푸드마켓)에 방문하여 필요한 기부식품등을 선택 * 기부식품등 : 식품 및 생활용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업장이 속해 있는 해당 시·군·구 및 읍·면·동에 확인 	보건복지부
<p>아동 급식 지원 (지방이양사업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수급자 또는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아동 등 저소득층에 해당되는 아동 중에서 결식우려가 있는 아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해 시·군·구 아동급식위원회를 구성하여 급식 대상, 급식단가, 급식방법 등 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(복지로) 신청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<p>양곡할인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 급여 수급자) 및 법정 차상위 계층 • 「한부모가족지원법」 제5조 및 제5조의2에 따른 지원대상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부관리양곡 판매가격의 60%~90% 할인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농림축산식품부
<p>영양플러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80% 이하 가구 중 빈혈 등 영양위험 요인이 있는 임신부, 출산·수유부, 만 6세 까지(생후 72개월)의 영유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개인별 영양 상태에 따라 영양 보충식품(쌀, 감자, 달걀, 우유, 검정콩 등) 제공 • 건강한 식생활 관리방법과 모유 수유를 촉진·지원하는 교육 및 상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보건소에 신청 	보건복지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자산형성 지원사업 (청년내일저축 계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하는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층 가구 중 소득 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인 청년(만15~39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이 매월 10만원 저축하면, 정부에서 1:3 정액 매칭 지원, 3년 만기 시 1,440만원(+이자) 수급 가능(본인 저축 360만원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온라인(복지로) 신청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수당, 장애아동수당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수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기준중위소득 50%이하)의 18세 이상 등록 장애인 중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 (종전3~6급) 장애아동수당 :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(기준중위소득 50% 이하)의 18세 미만 장애아동 <p>* 중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(종전 1급,2급 및 3급 중복) * 경증장애인 :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자(종전3~6급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수당 : (시설)월 6만원, (재가)월 4만원 장애아동수당 :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중증장애인 월 9~22만원 - 경증장애인 월 3~11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비용 및 검사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신규 장애인등록 심사의 경우) 기초생활 수급자 대상 (재판정 장애심사인 경우)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대상 (직권 장애심사의 경우) 모든 장애인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진단서 발급비용) 장애정도 심사용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지적, 자폐성, 정신장애 : 4만원 - 기타장애 : 1만 5천원 (검사비) 장애정도 심사용 검사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10만원 범위 내 지원 (진단서발급비 별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저소득층 기저귀·조제 분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기저귀) 기초생활보장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수급 가구 및 기준중위 80% 이하의 장애인·다자녀 (둘째이상) 가구의 만 2세 미만 영아 (조제분유) 기저귀 지원대상 중 산모의 사망·질병으로 모유수유가 불가능한 경우, 아동복지시설 등 아동의 경우 등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저귀(월8만원)·조제분유(월 10만원) 구매비용을 국민행복카드에 바우처 포인트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영아의 주민등록 주소지 관할 보건소·주민센터에 방문신청 또는 온라인신청 (복지로) 	보건복지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차상위 자활근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50 이하인 차상위 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접일자리 및 급여제공 (일 8시간, 시장진입형 기준 월 급여 약 16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희망복지지원단 관리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 수급가구, 차상위 빈곤가구, 긴급지원 대상가구 및 국민기초생활수급자 탈락 가구 중 통합사례관리를 통해 탈빈곤·빈곤 예방 지원 가능 가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서비스 연계(단, 연계할 수 있는 적절한 서비스가 없는 경우 의료비, 생활지원비, 교육훈련비 등 지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차상위계층 통신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차상위계층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이 낮은 사회적 취약계층 대상 가계통신비 부담완화를 위해 이동전화요금 감면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본감면(11,000원) 및 통화료 35%감면(월최대 21,500원, 가구당 4인까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통신요금감면 전용 센터(☎1523) •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 • 정부24(www.gov.kr) • 신분증 지참하여 가까운 통신사 대리점 또는 지역주민센터 방문신청 	과학기술정보통신부
학교 우유급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족의 학생, 특수교육대상자, 교육비 지원대상자, 국가유공자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기중(공휴일 제외) 및 방학, 250일 내외 * 방학의 경우 여름방학 24일, 겨울방학 48일 의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별 신청 및 선정 	농림축산식품부
우유바우처 시범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~18세의 아동 및 청소년 중 다음에 해당하는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국민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, 주거, 교육)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, 장애인, 국가유공자 자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1.5만원 한도 내에서 유제품 구매가 가능한 바우처 카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농림축산식품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전기요금 할인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상이자, 유공자, 차상위계층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기요금 할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초생활 (월 1.6만원 한도, 하계 2만원 한도) * 장애인 유공자 (월 1.6만원 한도, 하계 2만원 한도) * 차상위 (월 8천원 한도, 하계 1만원 한도) * 상세한 지원내용은 한전고객센터로 문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전력공사 지사 방문하여 신청하거나, 한전사이버지점 포털사이트 (cyber.kepco.co.kr) 통해 신청 * 한전고객센터(☎ 123) 	산업 통상 자원부
도시가스요금 경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독립유공 상이자, 다자녀가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시가스요금 한도내 경감 (※ 취사·난방용 기준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차상위계층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에너지이용권 비수급자 : 동절기 (12~3월) 148,000원, 그 외 4,950원 - 에너지이용권 수급자 : 동절기 (12~3월) 86,000원, 그 외 4,950원 * 차상위계층확인서 발급대상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동절기(12~3월) 18,000원, 그 외 2,470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역도시가스 고객센터로 우편·방문 접수 신청, 또는 거주지 관할 주민센터로 경감 접수 신청 	산업 통상 자원부
열요금 감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(건강보험 본인부담 경감, 장애수당, 자활근로, 차상위계층 확인), 한부모가족,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유공자, 다자녀가구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열요금 할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기초생활수급자(월5천원~1만원) * 차상위계층(월 5천원) * 장애인, 유공자(월 5천원) * 다자녀가구(월 4천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지역난방공사 (www.kdhc.co.kr) 홈페이지 '에너지 복지요금 - 요금 감면 신청하기'로 인터넷 접수 * 한국지역난방공사 (☎1688-2488) 	산업 통상 자원부
미소금융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자, 신용평점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로 제도권 금융기관 이용이 어려운 자영업자 (창업예정자 포함) 및 취약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자활에 필요한 창업자금, 운영자금 및 취약 계층자립자금 등을 무담보·무보증 연 2~4.5%의 저금리로 최대 7천만원까지 대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☎1397) 및 미소금융 재단·지역법인 	금융 위원회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소득 대비 채무가 과다하여 연체가 되거나 연체될 우려가 있는 등 채무 상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연체 30일 이하) 분할상환 전 상환유예(6개월), 연체이자 감면, 원리금 분할상환(최장10년) • (연체 31~89일) 연체이자 감면, 금리인하, 원리금 분할상환(최장10년) • (연체 90일 이상) 이자전액 감면, 원금감면(최대70%), 원금분할상환(최장10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용회복위원회 (☎1600-5500),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☎1397) 	금융위원회
풍수해보험 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※ 보험목적물 '주택(동산포함)' 가입 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풍수해보험료 지원 * 기초생활수급자 86.5%~, 차상위계층 77.5%~ ※ 지자체에서 추가지원 시 최대 92% 까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자체 및 민간 보험사를 통해 가입 	행정안전부
농업인 안전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만15~87세의 농업인 - 일반농가 - 영세농가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농업인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농업인안전보험 보험료 지원 - 영세농가의 경우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시 보험료의 70% 지원 (일반농가는 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농·축협으로 문의 	농림축산식품부
어업인 안전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업, 양식업에 종사하고 있는 만 15세~87세 어업인 및 어업근로자 • 영세어업인(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어작업 중 발생한 재해를 보상하여 어업인의 생활 안정을 도모하기 위하여 보험료 지원 • 영세어업인의 경우 보험료의 70% 지원(일반어업인은 5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 수협 회원조합 및 영업점으로 문의 	해양수산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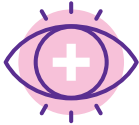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15회 이상 대중교통을 이용할 경우 알뜰교통카드 전용 카드 및 앱을 통해 대중교통 이용 시 보행·자전거 이동거리에 비례하여 마일리지를 지급해주는 제도로, 저소득층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의 경우 대중교통요금 마일리지 추가 적립 가능 * 각 1회 교통요금 지출액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천원 미만 : 최대 500원 적립 가능 - 2천원~3천원 : 최대 700원 적립 가능 - 3천원 이상 : 최대 900원 적립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알뜰교통카드 발급 후, 알뜰교통카드 회원 가입 신청 * 알뜰교통카드 고객센터 (☎031-427-4415) 	국토교통부
<p>중증장애인 근로자 출·퇴근비용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출·퇴근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고용 유지에 어려움을 겪는 중증장애인 근로자 - 최저임금 적용제외 인가 또는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인 중증장애인 근로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7만원 한도 내에서 출퇴근에 소요되는 교통실비 지원 - 버스, 택시(장애인콜택시 포함), 기차, 자가용 주유비, 유료도로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신청 (1588-1519) 	고용노동부
<p>한시적 양육비 긴급 지원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육비 미지급으로 미성년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거나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는 양육비 채권자로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액 :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기간 : 9개월 (최대 3개월 연장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육비이행관리원 (1644-6621) 	여성가족부
<p>양육비 이행 확보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부모 또는 모로 기준 중위소득 125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이혼·미혼 양육 부·모가 비양육 부모로부터 양육비를 원활히 받을 수 있도록 양육비 이행 확보 소송, 채권 추심, 면접 교섭서비스 등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양육비이행관리원 (1644-6621) 	여성가족부




생계 지원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만24세 이하 청소년 부모로서 기준 중위소득의 100분의 63이하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 1명당 아동양육비 월 25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여성 가족부
(보훈) 생계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80세이상 참전유공자, 고엽제 후유의증 수당대상자 본인과 특수 임무유공자 및 5·18민주유공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1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 보훈(지)청 신청 (☎ 1577-0606) 	국가 보훈부
(보훈) 생활지원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(자)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 345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 보훈(지)청 신청 (☎ 1577-0606) 	국가 보훈부



2. 의료 지원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노인 실명예방 안검진 및 개안수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안검진) 만60세 이상 노인(저소득 노인 우선 선정) •(개안수술) 만60세 이상,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으로 백내장(눈시력 0.3이하), 망막질환, 녹내장 등 안질환자로 수술이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지원한도) 1인당 수술비 본인부담금 전액 * 개안수술과 관련없는 치료비, 간병비, 상급병실입원료 등 비급여 항목, 외래진료비, 개안수술 지원 결정전 수술비용 등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시·군·구 보건소 신청 	보건복지부
노인 인공무릎 관절수술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무릎수술) 만 60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으로 건강보험급여 '인공관절치환술(슬관절)' 인정기준에 준하는 질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부담금에 해당하는 검사비, 진료비 및 수술비 * 한쪽 무릎 기준 120만원 한도 실비 지원 * 무릎인공관절수술과 관련이 없는 검사비, 치료비, 입원료, 간병비 및 상급병실입원료, 선택진료비, 보호자 식대, 지원대상자 통보전 발생한 검사비, 진료비, 수술비 등 지원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시·군·구 보건소 신청 	보건복지부
영유아 발달 정밀검사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영유아 건강검진 발달평가 결과 "심화평가" 권고 판정 영유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기초(의료·주거·생계)수급자, 차상위계층 : 최대 40만원 그 외 건강보험 가입자 : 최대 2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주소지 관할 보건소에 신청 	보건복지부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(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), 법정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9~24세 여성 청소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리용품 전자바우처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소지 관할 읍·면 사무소, 동주민센터 방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및 앱 신청 	여성가족부
취약계층 환경성질환 예방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계층(저소득, 한부모 가정, 장애인 등) 사회 소외계층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실내환경 진단·컨설팅 (1,500개소), 이 중에 열악한 가구/시설을 대상으로 실내환경 개선 지원(500개소)하되, 환경성질환 소아·청소년 및 어르신 진료지원(200명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를 통해 지원 신청 (지자체 → 환경부로 지원대상자 추천) 	환경부
기후위기 취약계층·지역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후변화 취약계층(저소득, 독거노인, 어린이 등) 및 취약가구 밀집지역 내 취약시설(어린이집, 경로당, 도서관, 재래시장 등)을 관리하는 기관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계층 : 폭염대응을 위한 차열 페인트 도장(지붕, 벽면) 등 취약계층 밀집지역 : 폭염·한파 대응을 위한 적응시설(그늘막, 결빙취약지 열선 등) 설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자체를 통해 지원신청 	환경부
디지털미디어 피해 청소년 회복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9세~18세 청소년 청소년 인터넷·스마트폰 이용습관 진단조사 및 공존질한 검사 결과, 인터넷·스마트폰 과의존 원인으로 우울증, ADHD 등이 발견된 청소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종합심리검사, 병원 연계 및 치료비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일반계층 : 4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- 저소득·취약계층 : 60만원 이내 진료비 지원 ※ 기준 중위소득 50% 이하 가구, 한부모·조손가족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교에서 이용습관 진단조사 등을 통해 선별, 대상자는 청소년 상담복지 센터에서 관리 * 청소년전화 (☎ 1388) 	여성가족부


※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인 경우에만 지원되는 의료지원사업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차상위 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희귀난치질환, 중증난치질환 중증질환자, 만성질환자, 18세 미만인 자 • 소득인정액 기준 : 기준세대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50% 이하인 사람 • 부양의무자 기준 :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을 적용받고자 하는 자가 부양 의무자가 없거나,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요양급여비용 본인부담경감 : 의료급여와 유사수준의 본인부담금만 부담하고 일반 건강보험 가입자 본인부담금과의 차액은 국고 지원 • 건강보험료 지원 : 지역가입자에 대한 보험료 전액 국고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<p>장애인 의료비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등록장애인,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인 등록 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차 외래진료시 일부 지원 • 2, 3차 외래진료시 및 1, 2, 3차 입원시 전액 지원 * 급여항목에 대한 본인부담금에 한하여 지급 단, 상급종합병원 및 종합병원 2.3인실 입원료, 본인부담식대비 약제비 미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건강보험공단)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또는 의료급여 2종 여부와 장애정보를 요양기관 (정보마당)에 제공 • (의료기관) 진료시 정보마당을 통해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유형 또는 의료급여2종 및 장애여부 확인 후 장애인의료비 지원 처리 	보건복지부
<p>희귀질환자 의료비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희귀질환 산정특례에 등록된 건강보험가입자 중 환자가구와 부양의무자가구의 소득 및 재산 기준 만족자 • 차상위본인부담경감 대상자 중 희귀질환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간병비(97개 질환), 특수식이 구입비(28개 질환 등)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• 희귀질환 헬프라인 누리집 온라인 신청 	질병관리청

3. 교육 지원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국가장학금 (1 유형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- 기초생활수급자·차상위계층~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※ B학점 이상(단, 기초·차상위는 C학점 이상, 신입생 및 장애학생,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금액) 등록금 범위 내 기초·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- 학자금지원 1~8구간은 연간 최대 570~35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 	교육부
<p>다자녀 (세자녀 이상) 장학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- 기초·차상위·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 세자녀 이상 가구의 미혼인 대학생 * 단, 23~2학기 이후 입학(신·편입)자는 입학 당시 만 39세 이하인 대학생 ※ B학점 이상(단, 기초·차상위는 C학점 이상, 신입생 및 장애학생, 자립준비청년은 성적기준 미적용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금액) 기초·차상위 모든 자녀 등록금 전액 지원 - 학자금 지원 1~8구간 첫째, 둘째는 연간 570~450만원, 셋째 이상은 등록금 전액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 	교육부
<p>대학생 근로장학금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민국 국적 소지자 중 국내 대학에 재학중인 대학생 - 기초·차상위~학자금 지원 9구간 이하 가구의 대학생 ※ C학점 이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지원단가) 교내근로의 경우 시간당 9,860원, 교외근로의 경우 12,220원 (지원범위) 학기당 520시간/주당 학기 중 20시간, 방학 중 40시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290 	교육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복권기금 꿈사다리 장학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(기초, 한부모, 차상위) 가정의 중1~고3 학생 ※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※ (SOS장학)「긴급복지지원법」 제2조에 해당하거나 이에 준하는 긴급위기 상황이 발생하여 학업 지속이 곤란한 학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※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를 통해 안내 예정 대학 졸업 시까지 매월 장학금* 및 교육 프로그램(멘토링, 멘토링 캠프) 등 지속 지원 * 장학금 매월 25~45만원 지원 ※ (SOS장학) 위기 상황 해소를 위한 긴급 한 지원임을 고려하여 10개월 한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속 학교에서 한국장학재단 학자금지원시스템 (eduman.kosaf.go.kr)을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 	교육부
파란사다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소득분위 5분위 이내의 학생 또는 장애학생, 탈북학생, 한부모가족 지원대상자, 보호종료아동, 청소년 복지시설 입·퇴소청소년 등 취업 취약계층 대학생 중 선발학기 재학생 ※ 당연 지원 대상은 아니며 선발될 경우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연수 내용) 언어 교육, 기본 소양 교육 등 사전교육 → 국가별 4~5주간 해외 연수 → 진로 멘토링 등 귀국 후 관리 (지원 내용) 항공료, 보험료, 교육비, 일부 현지 체류비 등 포함 학생 1인당 평균 400만원 내외 * 파견 국가 별 물가수준 고려 차등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권역별 사업 주관 대학에 문의 후 신청 * 권역별 주관대학 선정 현황은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 참고 	교육부
우수학생 국가장학금 (드림장학금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 학생(기초생활수급자 또는 차상위) 중 해외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우수 고교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유학준비생 유형) 국내장학생 (고2·고3) 50명 대상/ 학업장려비 지원 (유학생 유형) 유학준비생 유형 장학생 중 '드림장학금 장학위원회'에서 선발한 해외대학 진학자/ 연간 최대 6만 USD 이내 (학비, 체재비), 항공료 별도 (2년 내 5천 USD 이내, 4년 내 총 1만 USD 이내)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290 	교육부
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특별상환유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상환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 졸업생(만 35세 이하) 중 아래 사유로 인해 상환이 어려운 자 * 부모의 사망, 부모의 파산·면책·개인회생 결정, 본인이 수급자, 본인의 장애, 차상위 계층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자금 대출원리금 상환 유예 (최대 3년) 후 무이자 분할상환 (4년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 	교육부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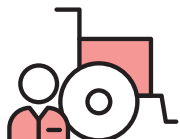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취업후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및 이자면제</p>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학부생 및 대학원생 중 아래 요건을 충족한 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학부생) 기초·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8구간 이하의 만 35세 이하 - (대학원생) 기초·차상위 및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의 만 40세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금 소요액 전액* 및 생활비 (연 400만원) 저금리 대출 지원 (‘23.2학기 현재 1.7%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대학원생은 총 한도 있음 • 연간소득이 일정수준(‘23년 기준 연 2,525만원) 이하인 경우 상환 유예 • 기초·차상위 학생은 재학 중 등록금·생활비 대출이자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생활비대출은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무이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국장학재단 홈페이지 (www.kosaf.go.kr)를 통해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한국장학재단 ☎ 1599-2000 	교육부
<p>평생교육 바우처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19세 이상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기준중위소득 65% 이하인 가구의 구성원*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1인 가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 ※ 국가장학금 중복수혜 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생교육강좌 수강료·교재비 (1인당 연간 35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평생교육 바우처 홈페이지 (www.lllcard.kr)를 통해 신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평생교육 바우처 상담센터 ☎ 1600-3005 	교육부
<p>저소득층 유아학비 추가 지원 사업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유아학비 지원 자격이 있고, 사립 유치원에 다니는 법정 저소득층 유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※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립유치원 재원 시 추가 학부모 부담금 범위 내 월 최대 20만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(복지로 : 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	교육부
<p>국가공무원 채용시험 응시 수수료 면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, 「한부모 가족지원법」에 따른 지원대상자, 「장애인연금법」에 따른 수급자,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응시할 경우 응시수수료 면제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5급 이상 공무원 채용시험 : 1만원 -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: 1만원 - 6·7급 공무원 채용시험 : 7천원 - 8·9급 공무원 채용시험 : 5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사이버국가고시센터 (www.gosi.kr)에서 원서접수 시 응시 수수료 면제 신청 	인사혁신처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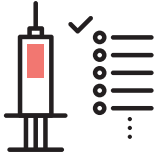

4. 주거·돌봄 지원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저소득층 에너지 효율개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국민기초생활수급가구(수선유지급여가구 제외), 차상위계층, 복지 사각지대 저소득가구 (지자체장 추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저소득가구의 에너지사용 환경 개선을 위한 단열, 창호, 보일러 교체 및 냉방기기 등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 시·군·구를 통해 신청 	산업 통상 자원부
농촌집고쳐주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농촌지역(읍·면)에 거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일반 저소득 취약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취약계층의 노후·불량주택 수리 지원 - 가구당 650만원 한도, 노후·불량 정도가 심한 경우 840만원까지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시·군을 통해 신청 	농림 축산 식품부
가사간병 방문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65세 미만의 기준중위소득 70% 이하 중 장애 정도가 심한 장애인, 중증질환자, 희귀난치성 질환자, 소년소녀가정, 조손가정, 한부모 가정, 기타 위에 준하는 경우로 시군구 청장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장애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, 부상으로 인한 장기치료자 등 가사·간병 서비스가 필요한 자 • 만 65세 미만의 의료급여수급자 중 장기입원 사례관리 퇴원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신체수발·건강·가사·일상생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 복지부
노인맞춤 돌봄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65세 이상 국민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 또는 기초연금수급자로서 유사 중복지업* 자격에 해당되지 않는 자 *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직접서비스(안전지원, 사회참여, 생활교육, 일상생활 지원) 및 연계서비스(생활, 주거, 건강 지원 연계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 및 복지로를 통해 신청 	보건 복지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독거노인·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세 이상 독거노인, 노인 2인가구 조손가구 중 '기초생활수급자', '차상위', '기초연금수급자' 혹은 생활여건,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장애인 활동지원 수급자 혹은 생활여건, 건강상태를 고려하여 상시 보호가 필요한 인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가정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화재 등 응급상황에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화재감지기, 활동량감지기 등 ICT 장비 설치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서비스 수행기관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서 본인 및 대리인 신청가능 	보건 복지부
<p>방과후 보육료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12세 이하의 차상위 이하 (법정저소득층 포함) 및 장애아동 중 초등학교 취학아동이 방과후에 어린이집을 일일 4시간 이상 이용할 경우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일반아동 월 10만원, 장애아동 월 279,000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 복지부
<p>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모 또는 배우자가 생계·의료·주거·교육급여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*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* 차상위본인부담경감, 차상위자활, 차상위 장애인, 차상위자격확인 산모 및 배우자 등 해당 가정의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합산액이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 금액에 해당하는 출산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모건강관리, 신생아 건강관리, 가사활동 지원, 정서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민등록관할 보건소에 신청 	보건 복지부
<p>발달재활 서비스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준중위소득 180% 이하의 18세 미만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아동 * 6세 미만 영유아의 경우 장애등록 되지는 않았지만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장애가 예견되어 발달재활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전문의가 인정한 경우 서비스 이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장애아동 1인당 月 25만원 상당 (자부담 포함)의 바우처 제공 (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 복지부



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언어발달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의 만 12세 미만 비장애아동(한쪽 부모 및 조손가정의 한쪽 부모가 시각·청각·언어·지적·자폐성·뇌병변 등록 장애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 1인당 月 22만원 상당 (자부담 포함)의 언어발달지원서비스 제공 (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 지원금 차등 지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아 가족양육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돌봄서비스) 만 18세 미만의 중증 등록 장애아와 생계·주거를 같이 하는 가정 • (휴식지원프로그램) 소득기준 상관 없이 만 18세 미만의 모든 장애아 가족으로 돌봄서비스를 받지 않는 가정도 참여 가능, 돌봄서비스를 받는 가정을 우선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(돌봄서비스) 아동 1명당 연 960 시간 범위 내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기준중위소득 120% 이하 가정 : 전액지원 - 기준중위소득 120% 초과 가정 : 일부 본인부담(40%) • (휴식지원프로그램) 자조모임, 가족치료·상담, 부모교육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인 보조기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등록된 지체·뇌병변·시각·청각·심장·호흡·지적·자폐성·언어 장애인 중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42개 품목 무료교부(지원기준액 내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(지체·뇌병변·심장) 보행차, 식사보조기구, 목욕의자, 전동침대, 안전손잡이, 휠체어용 보행기, 피더시트, 소변수집장치, 낙상알림기 등 31 품목 - (시각) 음성유도장치, 음성시계, 영상확대 비디오(독서확대기), 문자판독기, 녹음 및 재생장치 등 7품목 - (청각) 시각신호표시기, 진동시계, 헤드폰 (청취증폭기) 등 4품목 • 당해연도 보조기기 신청시 1인 1제품 지원이 원칙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인 활동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만 6세 이상~만 65세 미만의 장애인복지법 상 등록 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활동지원 급여와 특별지원 급여를 합산하여 매월 바우처 제공 * 차상위 활동지원급여(본인부담금 : 정액(20천원), 특별지원급여 본인부담금 : 면제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지역사회 서비스 투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 중위소득 140% 이하의 가정의 해당 서비스별 욕구기준에 충족하는 자 (서비스별 특성에 따라 상이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이용자가 신청한 사회서비스의 이용권(바우처)을 제공 (소득 기준에 따라 정부지원금 차등 지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지역아동센터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 아동 * 시설별 신고정원의 50% 이상은 우선돌봄 아동(기초수급자, 차상위계층, 장애·다문화·한부모·조손가구의 아동 등) 배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아동보호(안전교육, 급식), 교육(일상생활 지도, 학습능력 제고), 정서적 지원(상담, 가족지원), 문화 서비스(체험활동, 공연), 지역연계(인적·기관연계) 프로그램 운영 ※ 월-금요일을 포함해 주 5일, 1일 8시간 이상 상시운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지역아동센터,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	보건복지부
취약계층아동 등 사례관리 (드림스타트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0세~12세(초등학생 이하) 아동 및 가족, 임산부 -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, 한부모 가정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정방문을 통한 주기적 상담실시, 아동의 건강한 성장 발달을 위해 통합서비스 지원 • 건강(치과)검진, 예방접종, 언어 치료, 기초학습, 체험활동, 심리 검사 및 치료, 부모교육, 방역서비스, 가족상담 및 치료 등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초등돌봄교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돌봄이 필요한 맞벌이·저소득층·한부모·다자녀·다문화 가정 등의 초등학생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돌봄서비스 프로그램 무료 제공, 교육비 지원 대상학생 급·간식 무상 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학교별 돌봄교실 신청 	교육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국가유공자 재가복지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세 이상으로 노인성 질환 또는 상이처 등으로 거동이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이 곤란한 보훈대상자 중 독거 또는 노인부부세대이고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60%이하인 경우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후복지업무 근로자가 재가서비스 지원대상자 가정을 방문하여 취사세탁청소 등 집안 내 가사 활동 및 식사수발, 병원동행 등 건강관리 지원, 산책·심부름·말벗 등 편의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 	국가보훈부
아이돌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맞벌이, 취업 한부모, 부모의 장애, 다자녀가정 여부, 부모의 장기입원, 재학, 취업준비 등이 발생한 가정의 만12세 이하 아동 건강보험료 기준에 따른 소득유형에 따라 정부지원금액 차등 지원 - 수급자, 차상위 지정자는 건강보험료 납부액과 무관하게 '가'형으로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간제 돌봄(연 960시간) : 12세 이하 아동을 대상으로 놀이활동, 준비된 식사 및 간식, 보육시설 등 하원 동행 등 돌봄서비스 제공 종일제 돌봄(월 80~200시간) 36개월 이하 아동 대상 이유식 먹이기, 젖병소득, 기저귀 갈기, 목욕 등 돌봄제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 신청 또는 온라인 (복지로 : www.bokjiro.go.kr) 을 통해 신청 * 온라인신청은 직장건 강보험 가입자만 가능 	여성가족부
청소년 방과후 활동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방과후 돌봄(활동)이 필요한 청소년 (초4~중3) * 우선순위 지원대상 :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, 한부모, 조손, 다문화, 장애 가정, 2자녀 이상 가정, 맞벌이 가정의 청소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다양한 체험활동, 진로·직업교육, 보충학습지원, 급식, 상담, 캠프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초등) 온라인 신청* 또는 방문 및 유선 신청 (중등) 방문 및 유선 신청 * 정부24 온종일돌봄 원 스톱서비스 (www.gov.kr)에서 신청 ** 방과후아카데미 홈페이지에서 지역별 운영기관 확인 가능 (www.youth.go.kr/yaca) 	여성가족부

5. 문화·법률 등 기타 지원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산업기능요원 배정시 우선순위 부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가기술자격증이 있는 직업계고 졸업자 등의 현역입영대상자로서 지정업체에 종사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지원대상자 * 세부조건 : 매년 5월중 고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역 배정인원 일정 범위내 경제적 약자 우선순위 배정 * 지정업체에서 인원 배정 신청 (매년 6월) → 병무청에서 지정업체에 인원 배정(매년 12월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정업체에서 추천 권자에게 배정신청 	병무청
취업맞춤 특기병 학력조건 완화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현역입영대상자로서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학력 제한 완화(고졸이하 → 대학 학력자도 지원가능) * 단, 고용노동부 주관 기술훈련은 대학 마지막 학기에 참여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병무청 홈페이지 → 병무민원 → 민원안내 → '경제적 배려대상자 지원대상 여부 확인 신청'에서 접수 * 병무민원상담소 (☎1588-9090) 	병무청
사회복무요원 겸직허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사회복무요원으로 복무중인 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무 중 겸직허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복무기관에 겸직 허가신청서 및 수급 자격 증빙서류 제출 	병무청
차상위계층 무료법률 구조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 제2조 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는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법률상담, 민·가사 사건 등 소송 대리, 형사변호 무료지원 (단, 민·가사 사건의 경우 승소금액 3억 이하인 경우만 무료지원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한법률구조공단 지부, 출장소, 지소 방문 신청(위치 문의 및 전화상담 : 국번없이 132번) 	법무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서민 법률 보호를 위한 법률홈닥터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다문화가족, 범죄 피해자 등 법률 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서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채권·채무, 근로관계, 임금, 상속·유언, 이혼, 친권, 양육권, 손해 배상, 개인회생, 파산 등 생활법률 전반에 관한 법률상담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65개 배치기관(지자체 또는 사회복지협의회)으로 전화예약 (평일 10시~17시) 또는 법률홈닥터 홈페이지에서 상담예약 	법무부
<p>통합문화 이용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6세 이상 (2018.12. 31. 이전 출생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문화예술프로그램 관람 및 체육 활동, 음반·도서 구입 또는 국내 여행 시 사용할 수 있는 통합문화 이용권(문화누리카드) 발급 * 개인(카드1매) 당 연간 13만 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및 문화누리카드 누리집(www.mnuri.kr) 또는 모바일 앱(공식 문화누리카드)을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	문화체육관광부
<p>과학문화 바우처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※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 (scivoucher.kofac.re.kr)을 통해 안내 예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4년 사업계획 별도 안내 - 과학공연, 전시·체험, 도서, 교구, 강연·교육 등 과학문화 상품 및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온라인 바우처 발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과학문화바우처 온라인 포털 (scivoucher.kofac.re.kr)을 통해 신청 	과학기술정보통신부
<p>방송소의 계층 방송접근권 보장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등록 시각·청각 장애인(복지부) 및 등록 눈·귀 상이등급자(보훈부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각·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방송매체에 접근할 수 있도록 방송수신기 보급 - 저소득(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) 장애인 대상자에게 우선 보급(선정 후 보급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청자미디어재단 또는 홈페이지 (tv.kcmf.or.kr)를 통해 신청 * 상담전화 (☎ 1688-4596) 	방송통신위원회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수당수급자, 장애아동수급자, 장애인연금수급자, 차상위계층, 한부모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 소유 KB국민카드에 포인트 충전(1인당 10만원) -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산림복지시설에서 숙박비, 입장료, 프로그램 체험료 등으로 사용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홈페이지 (www.forestcard.or.kr) 또는 우편신청 (주소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센터 센터), 모바일 신청 (개인) 가능 	산림청
스포츠킴강좌이용권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만 5~18세 유·청소년 - (1순위)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- (2순위) 신규 및 동 사업 30개월 미만 이용자 중 차상위계층, 법정 한부모가정 - (3순위)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기초생활수급자 - (4순위) 동 사업 30개월 이상 이용자 중 차상위 계층, 법정 한부모가정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취약계층 유·청소년의 건전한 여가활동을 위해 1인당 월 10만원 범위 내 12개월간 스포츠킴강좌 수강료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시·군·구 주민센터 및 스포츠킴강좌이용권 포털 사이트 (svoucher.kspo.or.kr)를 통해 온라인 신청 가능 * 국민체육진흥공단 (☎ 02-4101298-9) 	문화체육관광부
주택용 소방시설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구당 소화기, 화재경보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소방서를 통해 신청 	소방청
지식재산권 보호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수급권자, 차상위계층,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및 가족, 장애인, 학생, 소기업,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인 사람, 5·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고엽제 후유증환자·고엽제후유의증환자 및 고엽제후유증 2세 환자,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, 참전유공자, 다문화가족, 한부모 가족, 청년창업자, 가구 기준중위소득 125%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지재권 상담, 지재권 출원 서류작성, 지재권 심판·심결취소소송 대리, 지재권 침해사건에 대한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방문 또는 전화(☎02-6006-4300), 홈페이지 (www.pcc.or.kr) 	특허청

별도의 지원기준이 있는 취약계층 지원사업





1. 생계 지원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										
긴급복지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갑작스러운 위기사유(주소득자의 사망, 휴·폐업, 실직, 중한질병 등)가 발생하여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으로 소득·재산 기준* 등 요건을 충족하는 가구 * 소득 및 재산 기준 중위소득 75% 이하 (4인 기준 429.7만원), 재산기준(대도시 241백만원, 중소도시 152백만원, 농어촌 130백만원)/ 주거용재산 공제한도 : 대도시 6,900만원, 중소도시 4,200만원, 농어촌 3,500만원, 금융재산(600만원 이하, 단, 주거지원은 800만원 이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위기상황에 따라 생계, 주거, 의료, 사회복지시설 이용 지원 〈4인가족 월간 종류별 지원액〉 <table border="1"> <thead> <tr> <th>종류</th> <th>생계</th> <th>주거 (대도시)</th> <th>복지 시설</th> <th>의료</th> </tr> </thead> <tbody> <tr> <td>지원액</td> <td>183만</td> <td>66.2만</td> <td>149만</td> <td>300만 (1회)</td> </tr> </tbody> </table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* 가구원 규모에 따라 지원수준 상이 * 기타 부가급여로 교육비, 연료비 (10월 ~3월), 해산비, 장제비, 전기요금 등 지원 	종류	생계	주거 (대도시)	복지 시설	의료	지원액	183만	66.2만	149만	300만 (1회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할 시·군·구 긴급복지 담당자 또는 129보건복지상담센터를 통해 지원 요청 또는 신고 	보건복지부
종류	생계	주거 (대도시)	복지 시설	의료										
지원액	183만	66.2만	149만	300만 (1회)										
기초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65세 이상 노인 중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- 2023년 선정기준액 · 단독가구 202만원 · 부부가구 323.2만원 * 직역연금 수급자 및 그 배우자 등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2024년 월 최대 단독가구 333,840원, 부부2인 가구 534,140원 지급(연말 물가상승률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단위 신청 가능 - 지자체(읍·면·동)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신청 또는 온라인 신청(www.bokjiro.go.kr) 	보건복지부										
장애인연금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 18세 이상의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(중전 1급, 2급, 3급 중복) * 수급자격 :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(23년 단독가구 122만원, 부부가구 195.2만원) 이하인 경우 * 본인 또는 배우자가 직역연금 수급자인 경우 등은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월 최대 40.2만원 지급(기초급여 + 부가급여) - 기초급여 : 장애로 인한 근로능력 상실 또는 감소에 따른 소득보전 급여로서 월 최대 32.2만원 지급 - 부가급여 :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보전 급여로서 소득계층에 따라 월 2~40.2만원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지자체(읍·면·동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										

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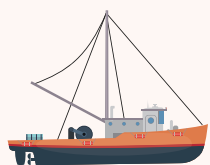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<p>(보훈) 생활조정수당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독립유공자·국가유공자·보훈보상대상자 본인 및 선순위유족 • 생활수준조사 실시 <p>* 단, 65세 이상, 중증장애인, 3급이상 상이보훈대상자 미실시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3인이하 가족 242천원 • 4인이상 가족 300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 보훈(지)청 신청 <p>(☎ 1577-0606)</p>	국가보훈부
<p>근로장려세제 (EITC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구 구성별로 부부 연간 총소득 기준* 미만으로 전년도 6.1.기준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인 경우 <p>* (단독가구) 2,200만원 미만 (홀벌이 가구) 3,200만원 미만 (맞벌이 가구) 3,800만원 미만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구원 구성별 (단독) 최대 165만원 (홀벌이) 최대 285만원 (맞벌이) 최대 330만원까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기신청(5.1.~5.31.), 기한후 신청(6.1.~11.30.) 기간에 ARS (1544-9944), 손택스(모바일홈택스), 인터넷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,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	국세청
<p>자녀장려세제 (CTC)</p>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전년도 12.31.기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으며, 부부연간 총소득 기준 7,000만원 미만이고 전년도 6.1.기준 재산합계액 2.4억원 미만인 경우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기신청 (5.1.~5.31.), 기한후 신청기간 (6.1.~11.30.)에 ARS(1544-9944), 손택스(모바일홈택스), 인터넷 홈택스 (www.hometax.go.kr), 전국 세무서 방문 신청 	국세청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국민취업 지원제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1유형) 15~69세 저소득층 -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60% 이하, 가구원 재산 4억 이하 - 단, 청년층(18~34세 이하)은 가구원 기준 중위소득 120%이하, 가구원 재산 5억 이하 •(2유형) 15~69세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, 청년 및 특정계층은 소득 무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공통) 수급자에게 맞춤형 취업 지원서비스 제공 •(1유형) 구직촉진수당 월 50만원 +부양가족* 1인당 10만원 (월 최대 40만원) 추가 6개월간 지원 *미성년자, 70세이상 고령자, 중증장애인 •(2유형) 훈련참여시 최대 6개월 동안 취업활동비용 월 최대 28.4 만원 지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온라인(www.kua. go.kr)또는 관할 고용센터 방문 	고용 노동부
공공산림 가꾸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만18세 이상으로 실업자 또는 정기 소득이 없는 일용근로자 * 참여제한 : 최대 3년간 2년이상 참여자, 가구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70% 초과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공공산림가꾸기 활동에 참여 시 1일 7만 8,800원~8만 6,880원 (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)의 급여 지급 * 월 근무시간 : 160시간 근무기간 : 약 10개월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시군 산림부서 또는 국유림관리소 방문 신청 •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한 신청 등 	산림청
산림복지 일자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신청일 현재 만 18세 이상인 자로서 사업별 선발기준에 적합한 자 * 취업취약계층, 여성 참여자 우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취업 취약계층·여성의 선발 우대를 통한 일자리 제공 및 임금지원 - 주 40시간 근무, 10개월 단기 고용, 월200만원 가량 임금 지급 (4대 보험 본인부담금 공제 후 급여는 달라질 수 있음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산림청 소속기관 및 사·도, 시·군·구의 모집공고에 따라 신청, 일모아시스템을 통한 온라인· 오프라인 신청 	산림청
개발제한 구역 생활비용 보조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개발제한구역법 시행령 제27조의 2에 따른 개발제한구역 지정당시 거주자로서 전년도 도시지역 가구당 월평균 소득액 이하인 세대의 세대주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학자금, 전기료, 건강보험료, 정보·통신비, 의료비 등 생활 비용을 대상으로 세대별 100만원 한도로 지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읍·면·동 주민센터를 통해 신청 * '생활비용 보조금 지급 신청 안내문'을 별도 공고 	국토 교통부


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새희망홀씨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의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인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계자금을 연 10.5% 이내의 금리로 최대 3천5백만원까지 대출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14개 은행에 신청 	금융위원회
여성가장 창업자금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인 이상의 가족을 부양하고 있는 저소득(기존중위소득의 60%) 여성 가장으로 생계형 창업을 희망하는 여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임대보증금(5천만원 한도, 연2%대 고정금리, 최대 지원기간 6년(최초 2년, 2회 연장 가능)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국여성경제인협회 전국 17개 지회로 문의(우편·방문 접수 가능) 	중소벤처기업부
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18세 미만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3% 이하) * 한부모가족 증명서는 만18세 미만 (취학 시 만 22세 미만)의 자녀를 양육하는 저소득 한부모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18세 미만 자녀의 아동양육비 (월21만원) * 고등학교 재학 시 만 22세 미만까지 지원 추가아동양육비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조손 및 만35세 이상 미혼 모·부의 만5세 이하 자녀, 월5만원 - 만 25~34세 이하 청년한부모의 만 5세이하 자녀, 월 10만원 - 만 25~34세 이하 청년 한부모의 만 6~18세 미만 자녀, 월 5만원 중고생 학용품비(연 9.3만원) 한부모가족복지시설 입소자 생활보조금(월 5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	여성가족부
청소년 한부모 자립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만24세 이하의 모 또는 부가 혼자서 자녀를 양육하는 청소년 한부모가족(기준 중위소득 65% 이하) * 한부모가족증명서 발급대상 : 기준 중위소득 72% 이하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부 또는 모가 만 24세 이하인 한부모아동양육비(월35만원), 자립지원촉진수당, 검정고시 학습비 * 0~1세 자녀의 경우 아동양육비 월 40만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거주지 관할 지자체 (읍·면·동 주민센터) 또는 온라인 (www.bokjiro.go.kr)을 통해 신청 	여성가족부
청소년 특별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자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사회·경제적 어려움이 있는 9세 이상 24세 이하 위기청소년 - 중위소득 100% 이하 가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생활(기초생계비, 숙식제공 등), 건강(진찰·검사 등), 학업(입학금 및 수업료 등), 자립(기술습득 및 진로상담 비용 등), 상담(심리검사 및 집단상담 프로그램 등), 법률(소송 및 법률상담비용 등), 활동(수련·문화활동비 등), 기타 지원(교복지원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신청 온라인 복지로 (www.bokjiro.go.kr)를 통해 온라인신청 가능 	여성가족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새일여성 인턴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여성새로일하기센터에 구직등록한 경력단절여성등 *새일여성인턴 사업에 취약계층(기준중위 소득 60% 이하 저소득층 등) 우선 연계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속장려금 60만원 지급 (인턴기간 종료 후 정규·상용직으로 채용되어 6개월 이상 근속한 경우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가까운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방문·상담 (☎1544-1199) *홈페이지 (saeil.mogef.go.kr) 	여성 가족부
근로자 햇살론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% 이하로 신용이 낮고 담보가 없어 은행 이용이 어려운 근로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근로자 햇살론 : 2,000만원 내 사업자 햇살론 : 운영자금 2천만원, 창업자금 5천만원, 고금리 채무 대환자금 3천만원 이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서민금융회사(지역농협, 새마을금고, 신협, 수협, 산림조합, 저축은행) 전국지점 및 협약 보험사에 신청 	금융 위원회
햇살론15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개인신용평점 하위 20%에 해당 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리 15.9%, 한도 2,000만원 내 3년 또는 5년, 원리금 균등분할 상환 표준화된 증빙서류 구비가 어려운 경우, 서민금융진흥원 모바일 앱과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에서 특례보증 신청 가능 성실상환 시 우대금리(1년마다 1.5%p~3%p, 최대 6%p까지 우대) 적용 가능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국 14개 은행 지점, 카카오뱅크 및 7개 은행 모바일 앱 (신한, 우리, 기업, 하나, 전북, 부산, 광주)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(☎1397), 서민금융진흥원 App 	금융 위원회
햇살론유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만 34세이하 취업준비생 또는 중소기업에 1년 이하 재직 중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 : 1,200만원내(일반생활자금의 경우 연간 600만원 한도) 금리 : 3.6~4.5% (보증료 0.1~1%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보증신청) 서민금융진흥원 App (대출신청) 협약은행 창구 및 APP 	금융 위원회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햇살론뱅크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정책서민금융상품을 6개월 이상 이용 부채 또는 신용도가 개선된 자 연소득 3천5백만원 이하 또는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이면서 신용평점 하위20% 이하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 : 2,500만원 내 금리 : 4.9~8%대(보증료 1~2% 포함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협약은행의 창구 또는 App 	금융위원회
햇살론카드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 가처분소득 600만원 이상 신용평점 하위 20% 이하(KCB 또는 NICE 기준) 신용카드 미보유자 대상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한도 : 200만원 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보증신청) 서민금융진흥원 App (카드신청) 협약 카드사 신청채널 	금융위원회
최저신용자 특례보증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연체경험 등의 사유로 햇살론15 등 정책서민금융 이용이 어려워 대부업·불법사금융 등 고금리 대출 이용이 불가피한 최저신용자 대상 - 개인신용평점 하위 10%에 해당하면서 연소득 4천5백만원 이하인 사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금리 15.9%, 한도 1,000만원 내 (최초 이용 시 최대 500만원 이내, 6개월 이상 정상이용 시 추가대출 가능) 3년 또는 5년(거치기간 1년 별도 선택 가능) 원리금 균등분할상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보증신청) 서민금융진흥원 App (대출신청) 협약 은행 및 저축은행의 창구 또는 App 	금융위원회
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상 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어선법에 따라 등록된 연근해어선의 소유자(원양어선, 수산물·해상화물 운송 어선 제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본인부담 보험료의 일부를 톤급 별로 차등 지원 - (어선원보험) 10톤 미만 71%, 30톤 미만 63%, 50톤 미만 39%, 100톤 미만 31%, 100톤 이상 15% - (어선보험) 10톤 미만 71%, 20톤 미만 63%, 20톤 이상 15% * 지자체별로 보험료의 일부를 추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할 수협 회원조합 영업점 또는 Sh수협 은행 방문·문의 (☎1588-4119) 	해양수산부



2. 의료 지원

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국가암검진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급여수급권자, 건강보험 가입자 및 피부양자로 당해 연도 검진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 기준(당해연도 검진 대상자 중 하위 50%)에 해당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의료급여수급자는 전액 지원 건강보험가입자는 본인부담분 10%(90% 공단부담)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각 연도 암검진 대상자 중 보험료 부과기준에 따라 선정 및 안내 	보건복지부
노인장기요양보험 저소득층 본인부담금 감경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65세이상 또는 노인성질환이 있는 65세미만자가 6개월 이상 동안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워 장기요양 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자 중 감경 적용 기준에 해당되는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노인장기요양보험 서비스 이용시 건강보험료 순위에 따라 본인부담금 40% 또는 60% 감경(본인부담금 재가 15%, 시설 20%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자동선정되어 별도 신청없음. 제외된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 지역지사 신청 	보건복지부
보훈대상자 장기요양급여 이용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요양등급(1~5등급, 인지등급) 판정을 받은 보훈대상자 중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재가급여 또는 시설급여 서비스 이용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중위소득 100%이하 또는 의료급여수급자 및 본인부담금 감경대상자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보훈대상별, 감경사유별 본인부담금의 40~80%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대상자 주소지 관할 보훈(지)청에 신청 	국가보훈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치매 검진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선별검사) 치매 또는 경도인지장애로 진단받지 않은 모든 주민 •(진단 감별검사) 선별검사상 인지 저하 (필요시 '정상' 결과인 자 가능) 이면서, 기준 중위소득 120% 이하인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선별검사)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에서 무료 실시 •(진단검사) 전국 보건소 치매안심 센터에서 무료 실시 또는 협약 병원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•(감별검사) 협약병원 실시 및 검사비 일부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치매안심센터 (보건소)에 신청 	보건 복지부
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부담의료비가 80만원을 초과 하는 경우 * 재산 7억원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본인부담의료비 중 [비급여 및 본인부담상한제 미적용 급여]의 80% * 단, 특실이용료, 보장구, 효과 미검증 고가치료법 등의 의료비, 미용·성형 등 제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국민건강보험공단 (지사) 방문 신청 	보건 복지부
한부모가정 의료보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한부모가족의 만 13세 이하 아동과 그 부양자(친권자) 중 다음 두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한 자 - 한부모가족 아동양육비 지원 대상자 (중위소득 63%이하) - 생계/의료급여 대상자가 아닌 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부양자 : 24시간 상해 후유장애, 질병 후유장애 •아동 : 상해·질병 입원일당, 골절 진단비, 암 진단비, 수술위로금, 탈구 신경손상, 압착손상 위로금, 식중독 입원 일당, 폭력피해 위로금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한부모가정의료보험 보험금 접수센터 - 전화: 02-3471-5116 - 팩스: 070-4758-9556 - 이메일: fjclaim@fjins.co.kr - 카카오톡채널: 서금원 한부모가정 의료보험 접수센터 	금융 위원회

3. 주거·돌봄 지원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국민임대 주택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 거주를 할 수 있도록 국민임대 주택 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LH, SH, 지자체 등 	국토 교통부
기존주택 전세임대·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·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(2순위)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이하인 자(자산기준 충족)·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이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하고, 사업시행자(LH·지방공사)가 소유자와 전세계약 후 저렴하게 임대 - 전용 85㎡이하 다가구·다세대 및 연립주택, 오피스텔 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할 시·군·구로 신청 	국토 교통부
다가구 매입 임대 출·용자 (기존주택 매입임대)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 의료)·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(2순위)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50%이하인 자(자산기준 충족)·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장애인(자산기준 충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도심 내 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계층이 현 생활권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여 개·보수 후 저렴하게 임대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할 시·군·구로 신청 	국토 교통부
영구임대 주택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순위) 기초생활수급자, 장애인, 유공자, 북한이탈주민 등 (2순위)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50%이하 및 자산기준 충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저소득층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영구 임대주택을 공급(사업승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관할 시·군·구로 신청 	국토 교통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장기전세 임대주택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(우선공급) 신혼부부, 한부모가족, 다자녀, 노부모 부양,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(일반공급)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70% 이하 (전용 60㎡ 이하) * 해당기관별로 기준이 다를 수 있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월임대료 부담이 없는 전세형 주택을 최장 20년간 시세의 80% 이하로 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LH, SH, 지자체 등 	국토교통부
통합공공 임대 공급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준 중위소득 150% 이하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최저소득 계층, 저소득 서민 등 사회취약계층 등이 저렴한 비용으로 안정적으로 거주할 수 있는 통합공공임대 주택 공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LH, SH, 지자체 등 	국토교통부
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차상위계층 저리용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부부합산 연소득 4천만원 이하인 차상위계층 중 주택도시기금의 전세대출인 '버팀목 전세자금대출'을 신청한 가구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기본금리 대비 1%p 금리 우대 * 금리는 보증금 및 소득 구간별 상이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온라인 신청 : 기금e든든 홈페이지(enhuf.molit.go.kr) • 방문 신청 : 주택도시기금 수탁은행 (우리·국민·농협·신한) 	국토교통부
장애인 거주시설 실비 입소이용료 지원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중위소득 이하의 실비 거주시설 이용 장애인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1인당 월 294천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장애인 또는 그 보호자가 관할 지자체(시·군·구)를 통해 신청 	보건복지부
장애인 주택 개조사업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장애인으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이하인 자 (자기주택 및 임대주택 지원 가능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화장실 개조, 보조손잡이 설치, 문턱 낮추기, 싱크대 높이 조절, 주출입구 접근로(마당포장), 경사로 설치 등 주택 내 편의시설·안전장치 설치 지원(가구당 최대 380만원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에 신청 	국토교통부

사업명	신청대상	지원내용	신청방법	부처
정보통신 보조기기 보급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등록장애인,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정보통신보조기기 제품 구입비용 지원 - 일반대상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80% 지원, 차상위계층 기초생활수급자는 보조기기 가격의 90% 지원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접수기간 중 관할 시·군·구 접수처 또는 인터넷(www.at4u.or.kr)을 통해 지원 신청 * 상담전화 (☎ 1588-2670) 	과학 기술 정보 통신부
온가족 보듬사업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자녀를 양육하는 만 24세 이하 기준 중위소득 100% 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구, 혼인 기록이 없고 사실혼 관계가 아닌 한부모가족 복지시설에 거주하지 않는 미혼모·부자 등 가족 역량강화가 필요한 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청소년 한부모의 자립역량 강화를 위해 양육, 취업 등 각종 정보를 안내하고 정부서비스 연계 등 사례관리(상담, 출산·양육지원, 멘토링, 자조모임, 교육문화 프로그램,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가족센터 (☎1577-9337) 가족상담전화 (☎1644-6621) 	여성 가족부
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한부모·조손가족, 다문화가족 및 청소년(한)부모, 1인가구 등 가족역량 강화가 필요한 가족 • 사고·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긴급위기가족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심층 사례관리 및 상담, 자녀 학습·정서 지원, 생활도움 지원, 지역사회 자원 연계 등 • 사고·재난 등 위기상황에 직면한 가족 대상 심리상담, 생활도움 등 긴급 위기지원 		여성 가족부
일상돌봄 서비스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돌봄이 필요한 중장년(40~64세), 가족돌봄청년(13~39세)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재가 돌봄·가사, 병원 동행, 심리 지원 등 서비스를 통합적으로 제공하여 일상생활의 어려움을 해소 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거주지 관할 주민 센터 	보건 복지부



중앙부처 차상위계층 지원사업 안내

발행인 | 보건복지부
발행처 | 보건복지부 복지정책과
홈페이지 | 보건복지부 www.mohw.go.kr
복지로 www.bokjiro.go.kr
발간일 | 2024년 1월
주소 | 세종특별자치시 도움4로 13
(정부세종청사 10동)
디자인 | (주)어진기획
제작 | 세종 (044)414-9700
서울 (02)2263-9707